

■ 2024년 전문자료집 ■

부 모 교 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2024년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 목 차 ☐

1. 기능향상지원1팀

- 24-01 집에서 작업치료 시작하기 5
- 24-02 감정표현을 도울 수 있는 미술활동 17
- 24-03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27

2. 기능향상지원2팀

- 24-04 보호자를 위한 허리운동 37
- 24-05 무발화 아동의 언어재활 47

3. 열린일터

- 24-06 2024년 열린일터 사업 및 운영지침 교육 65

집에서 작업치료 시작하기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24.10.07.~12.31
담당자	작업치료사 임주성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집에서 작업치료 시작하기

1. 집에서 작업치료 시작하기①

- 빨래집게 쏙기

2. 집에서 작업치료 시작하기②

- 한 손으로 자판기에 동전 넣기

3. 집에서 작업치료 시작하기③

- 동그라미 안에 도장 찍기

4. 집에서 작업치료 시작하기④

- 숨은 물건 찾기

※ 이용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설문조사를 근거로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



일상생활과의 연계

★ 물건을 하거나 못 찾았을 때, 같이 찾아봐 주세요.

✓	물려진 수건을 잘라서 길게 옷걸이에 걸어보세요.
✓	물려진 옷들을 건조대 위에 걸고 빨래집게로 잡아보세요.
✓	사용하고 남은 찢개 옷걸이를 새로 찢개로 만들어 연결시켜 보세요.
✓	빨래집게를 서로 연결하여 불고기 볼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가족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집 안에서 참여해 보세요.

집에서 작업치료 시작하기

2



작업재활실 보호자교육

한 손으로 자판기에 동전 넣기



손내 조작 능력 향상

한 손으로 여러개의 동전을 다루면서 손 안에
서 물체를 다루는 손내조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촉각인식 증진

시각적인 자극없이 물체를 촉각으로 구분하는
촉각인식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안내

여러개의 동전을 한 손에 들고, 그 손으로 한 개씩 동전을 넣어주세요.



- ① 10원, 50원, 100원 등 다양한 동전을 여러개 준비해 주세요.
- ② 아동이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만큼 동전을 쥐고, 손가락을 움직여 엄지-검지로 동전을 빼주세요.
- ③ 빼낸 동전을 엄지-검지로 자판기나 저금통 안에 넣어주세요.
- ④ 익숙해지면, 지정된 동전을 보지 않고 꺼내도록 해보세요.

다양한 방법 소개



① 누가누가 빨리 빼나

손 안에 일정한 양의 동전을 쥐고, 아동과 누가 엄지-검지로 빨리 빼는지 경쟁하며 게임을 합니다.

② 동전 분류하기

여러개의 다양한 동전을 한 손으로 손 안에서 빼내는 방식으로 각각의 동전을 분류합니다.

유의사항

- 아이의 손 크기를 고려하여 동전을 준비해 주세요.
- 동전을 빼낼 때, 꼭 엄지와 검지 손가락의 빼도록 해주세요.
- 초반에는 손을 펼치고 흔들어서 위치를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 단순한 반복과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판기에서 물건을 사는 등의 활동으로 재미를 만들어 주세요.

활동의 예상 효과

①

손내 조작능력 향상

손 안에서 손가락으로 물건을 빼내는 Palm-to-Finger Manipulation으로 조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②

촉각인식 증진

시각적 인식 없이 손 끝의 감각만으로 물건을 인식하는 촉각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③

손가락의 분리된 움직임

손내조작 과정을 통해 각 손가락의 분리된 움직임을 이끌어 내며, 다양하고 세밀한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④

실행계획 수립

단순한 과정의 반복적인 활동으로 보다 간단하게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주어진 규칙을 통해 이를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의 연계

 손가락을 사용하는 과정에 다양하게 참여해 보세요.

✓	주머니에서 특정 금액만큼만 꺼내도록 해보세요.
✓	두꺼운 책을 한 장씩 빠르게 넘겨보세요.
✓	책의 여러 페이지를 한 손에 쥐고 한 개씩 넘어가게 해보세요.
✓	연필로 글씨를 쓰다가, 내려놓지 않고 지우개를 잡아 지워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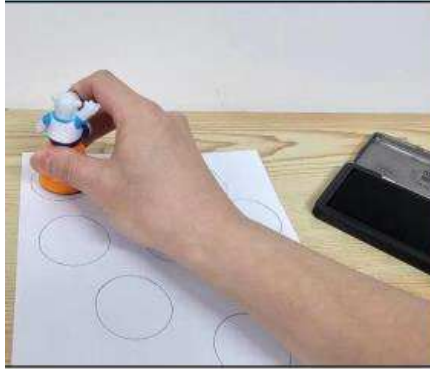
우리 가족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집 안에서 참여해 보세요.

집에서 작업치료 시작하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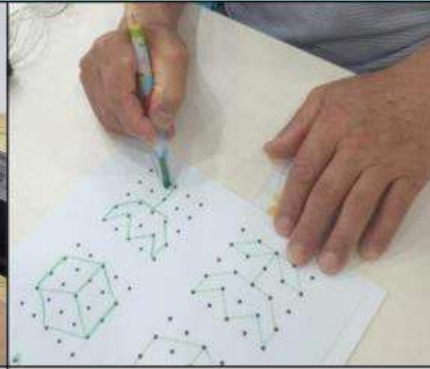
작업재활실 보호자교육

동그라미 안에 도장 찍기



손의 기민성 증진

우세손을 통하여 도장찍기를 수행하면서 손의 능숙한 움직임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눈-손 협응

제시된 원 안에 도장을 찍으면서 위치를 조절하는 시운동 협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안내

간단한 도장과 종이를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 ① 종이에 도장 크기와 유사한 동그라미를 여러개 그려주세요.
- ② 종이를 가운데에 두고 앉아서 우세손으로 도장을 원 안에 찍어요
- ③ 도장이 방향이 올바르게 되도록 찍는 방향을 유도해 주세요.
- ④ 익숙해지면, 속도를 빠르게 해 보세요.

다양한 방법 소개



① 동그라미 숫자대로 도장찍기

동그라미에 일련번호를 적어주시고, 지정된 순서대로 찍도록 해보세요.

② 동그라미에 방향 표시하기

동그라미에 표시를 하여 도장의 방향을 지시하도록 하고, 맞춰서 도장을 찍어보세요

유의사항

- 종이를 돌리거나 빼들지 않고 가운데에 두게 해주세요.
- 도장을 잡을 때, 주먹 모양 보다는 손가락으로 잡도록 도와주세요.
- 도장 모양이 실제 찍힌 모양과 비슷한 것이 좋아요.
- 너무 도장과 원의 크기를 맞추면 힘들어요.
- 즐겁게 하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활동의 예상 효과

①

손의 기민성 향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활동을 수행하며 손을 사용하는 기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②

눈-손 협응

지정된 공간에 도장을 찍는 과정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며 손을 가저가는 시운동 협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③

손가락의 개별적 움직임

도장의 방향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세밀하게 움직이면서 조절하여 분리된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④

실행계획 수립

단순한 과정의 반복적인 활동으로 보다 간단하게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주어지는 규칙을 통해 이를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의 연계

 글씨를 쓰거나 색칠을 할 때, 같이 참여해 보세요.

✓	주어진 칸 안에 글씨를 쓰도록 해보세요.
✓	미로찾기를 하면서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보세요.
✓	색칠할 때, 주어진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보세요.
✓	클립을 서로 연결하고 분리하는 일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집 안에서 참여해 보세요.

집에서 작업치료 시작하기 4



작업재활실 보호자교육

숨은 물건 찾기



주의집중력 강화

목적으로 하는 물건과 다른 배경이 되는 환경을 분류하여 인식함으로써 주의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고력 증진

숨겨진 물건과 짝을 이루는 물건을 생각하며, 각 물건별로 일련의 틀에 따라 분류를 하는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안내

아이가 자주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일상 물건을 사용해 주세요.



- ① 물건을 숨길 환경(방)을 결정하고, 숨길 물건을 모아서 사진을 찍어 주세요.
- ② 물건을 숨겨주세요. 단, 부분적인 모습이 꼭 보여야 합니다.
- ③ 다 숨긴 후에 아이에게 찾도록 해 주세요. 숨기는 과정을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 ④ 잘 찾지 못하면, 찍어둔 사진으로 힌트나 남은 물건을 알려 주세요.

다양한 방법 소개



1 사진을 보고 찾기

사진에 나와있는 물건을 방 안에서 찾아주세요.

2 짝 찾기

같이 쌍을 이루는 물건을 사진으로 찍고, 그중에 한 개만을 숨긴 후, 남은 짝을 보며 숨겨진 물건을 찾게 해 주세요.

유의사항

- 물건을 보이지 않게 두면, 주의집중 보다는 단기 기억을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 아이들 기준에서 알 수 있는 기준의 짝 기준으로 반영해 주세요.
- 숨기는 환경(방)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세요. 너무 복잡하면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안전을 항상 고려해 주세요.

활동의 예상 효과

1

주의집중력 강화

물건을 탐색하며, 찾으려는 물건의 형태를 기억하고 이를 주변 환경과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사고력 증진

남은 물건의 내용이나 짝 형태를 생각하고 추론하면서, 분류나 그룹 등과 같은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인지기능의 강화

탐색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순서와 기억, 주의집중 등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문제해결능력 경험

어려움이 닦쳤을 때,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며 전반적인 수행의 틀을 구성하고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의 연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식사 준비에서 아동이 수저나 젓가락을 놓도록 해보세요.
✓	어지러운 현관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게 해보세요.
✓	아이가 가지고 놀 장난감을 정리할 때, 주어진 방법에 맞춰 정리하도록 해보세요.
✓	일상생활 안에서 수행하는 간단한 과업 전에 순서를 설명하고 혼자서 순서를 맞춰 수행하도록 해보세요.

우리 가족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집 안에서 참여해 보세요.

보호자 교육 24-02

감정표현을 도울 수 있는 미술활동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24.12.11. - 2024.12.27.
담당자	장 현 주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감정표현을 도울 수 있는 미술활동

1. 감정표현

감정표현은 기분을 담아두지 않고 자유롭게 언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표현은 내적 경험과 외부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감정을 크게 분류하면 긍정적, 부정적, 양가적인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Brammer, 1982). 긍정적인 감정은 자기 확신과 행복감, 안정감과 만족, 기쁨과 사랑, 따뜻함 등이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 두려움, 우울과 불신감, 갈등, 죄책감과 적대감 등이 있다. 양가감정은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등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감정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정 표현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전달하거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느낌과 경험들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과정 또한 감정표현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이지연, 2010), 사람들의 관계를 경험하고 그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하게 감정표현을 하는 것은 타인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으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감정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주변인들의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심리적으로도 감정을 억압받으면 신체 저항력 감소와 노화작용을 촉진하게 되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뇌의 정서정보 전달의 문제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Sifneos, 1973).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점차 표현능력의 저하가 나타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대화의 감소, 타인들로부터 침묵하는 사람이라 인식되고 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자신의 명확하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체적, 심리적인 개인의 건강과 자아실현에도 아주 큰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감정표현과 미술치료

미술치료란 ‘창작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해 주므로 원만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심리 치료법’이다. 미술활동을 통해서 심리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창작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술을 통한 작품 활동이 내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세계를 외면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 속에 작품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미술치료는 이러한 창작을 통한 내면세계의 외면화 과정에서 개인의 갈등적인 심리상태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연루된 갈등 관계에 있는 심리, 정서적인 요소를 미술활동을 통하여 조화 있게 해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심리적인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혼란스러운 정신 구조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미술치료는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공통된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은 인격형성 및 이상적 자아형성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인지와 감각운동의 어려움이 있으며, 인지능력 및 적응능력, 의사소통능력과 협동심과 같은 사회적 행동양식에도 어려움을 보인다. 장애아동에게 예술 활동은 또 다른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고 자기만족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술치료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제점들을 경감시키거나 개선하며, 그들의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확대된 시각을 열어줄 수 있다.

미술치료의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미술 활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미술이라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게 한다.

둘째, 미술 표현은 무의식적인 생각, 감정, 느낌 등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한다.

셋째, 스스로 재료를 선택하고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넷째, 미술 활동은 친밀감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다섯째, 미술 작품은 대상에 대한 보충 자료로서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가정프로그램 제안

가정에서 아동과 함께 해볼 수 있는 감정표현을 도울 수 있는 미술활동을 소개드립니다. 한 번에 많은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마스크 팩 가면 만들기

프로그램	나의 얼굴 만들기	
목표	① 다양한 종류의 감정을 알 수 있다. ② 자신의 감정을 이해 할 수 있다. ③ 상황과 감정에 맞는 얼굴표정을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깨끗하게 세척되어 건조 된 마스크 팩 시트, 채색도구, 풀, 가위	
진행순서	활동내용	예시
	1. 얼굴표정 따라 하기 게임을 통해 다양한 표정을 연습해본다. 2. 마스크 시트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연상해본다. - 게임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함께 얼굴을 살펴보는 활동으로 진행해주세요.	
	3. 기쁨, 슬픔, 분노 등 다양한 감정과 실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4. 해당 감정과 연결하여 색, 모양, 느낌과 같은 것으로 바꾸어 표현해본다. - 감정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찾기 힘든 아동의 경우, 한 번에 여러 가지 감정을 다루기보다 한 가지씩 감정을 다루어주세요.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영상이나 동화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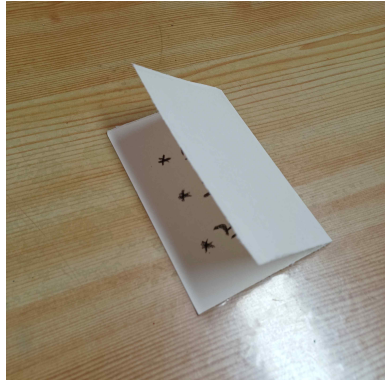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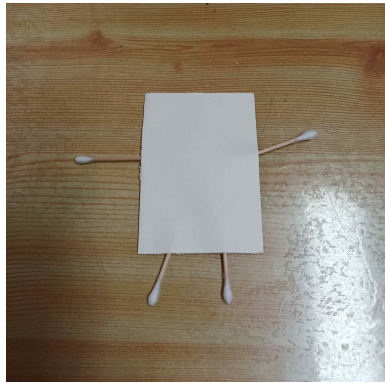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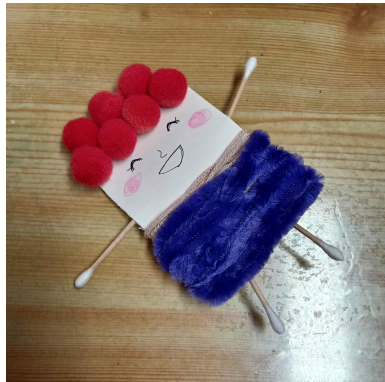
	5. 마스크 시트에 꼼꼼하게 풀을 칠하여 도화지에 붙인다. 6. 아동이 선호하는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마스크 시트에 나의 얼굴을 표현하여 그려본다. 7. 아동이 표현한 얼굴이 어떤 감정인지 적어준 뒤,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유의점	- 질문을 할 때에는 열린 질문을 사용하고, 아이의 말을 경청한다. 예) 오늘 활동 재미있었어? (×) 오늘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 (○)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만들기 활동을 하며 정서적인 안정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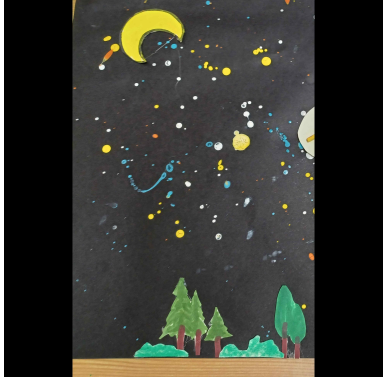
② 신문지 찢기

프로그램	나쁜 기억 날리기	
목표	①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다. ② 재창조 과정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승화할 수 있다.	
준비물	신문지, 유성 매직, 위생 백, 테이프(고무줄)	
진행순서	활동내용	예시
	1. 최근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해본다. 2. 신문지에 유성 매직을 이용해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본다. -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표현 자체가 힘든 아동의 경우, 연상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신문지 활동을 진행하여 감정이나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진행순서	3. 신문지 찢기, 구기기, 뭉치기, 던지기 등의 방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4. 신문지 활동을 진행하고 난 뒤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5. 표출된 감정을 ‘정리’, ‘담아준다’는 의미에 대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찢거나 구겨진 신문지를 비닐 백에 모두 담아 본다. － 예) ○○이가 친구랑 다했을 때, 서운했던 마음이 이렇게 컸구나? 우리 이 힘든 마음이 설 수 있도록, 모아서 잘 담아줄까?	
	6. 신문지 조각이 담긴 비닐 백의 가운데를 묶거나, 끝 부분을 묶는 방식으로 새로운 모양의 작품으로 변형시켜본다.	
유의점	－ 질문을 할 때에는 열린 질문을 사용하고, 아이의 말을 경청한다. 예) 오늘 활동 재미있었어? (×) 오늘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 (○)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만들기 활동을 하며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	

③ 걱정인형(소망인형) 만들기

프로그램	나의 요정친구	
목표	① 매개 표현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내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② 걱정, 소망에 대해 표현해 볼 수 있다.	
준비물	도화지, 털실(모루), 유성매직, 목공용 풀, 면봉, 가위, 스티커(꾸미기 재료)	
진행순서	활동내용 1. 아동의 걱정거리나 소망(소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다. 2. 요정의 몸통이 되어줄 종이에 아동의 소망과 걱정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적어준다.	예시 
	3. 몸통에 다리와 팔을 만들어 준 뒤, 표정, 머리카락, 옷 등 인형을 자유롭게 꾸며준다.	 

	4. 스티커나 그리기 도구로 배경을 꾸며준 뒤 원하는 위치에 요정을 붙여준다.	
유의점	- 소망이나 고민에 대해 물어볼 때, 대답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막연하게 생각되어 단순히 갖고 싶은 물건이나 먹고 싶은 음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적 질문법을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 “○○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하루 밤 사이에 ○○이가 고민하던 것이 해결 되었는데! 과연 뭐가 바뀌었을까?” - 질문을 할 때에는 열린 질문을 사용하고, 아이의 말을 경청한다. 예) 오늘 활동 재미있었어? (×) - 오늘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 (○)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만들기 활동을 하며 정서적인 안정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4. 결론

23년도에 진행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하여 “감정표현을 도울 수 있는 미술활동”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자료집을 준비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자기표현 및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구성원들 에게도 울음이나 도전적인 행동 등 기능적이지 못한 소통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아이가 어릴 때야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심리적인 저항을 낮추고,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양육에 있어 유익한 활동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5. 참고문헌

- 강수임. "미술놀이치료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4. 제주특별자치도
- 엄인하.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감정표현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9. 서울
- 서정화. "아동의 감정 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9. 서울
- Malchiodi, C. A. (1998). Understanding children's drawings. New York: Guilford Press. / 김동연, 이재연, 홍은주 역(2001). 아동미술 심리 이해. 서울: 학지사.

—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24.12.16. ~ 2024.12.20
담당자	정승영, 임은주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1.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의 중요성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부모와의 놀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감을 얻고, 자기표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기술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주요 역할:

- 애착 형성: 부모와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애착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 의사소통 능력 향상: 부모와의 대화 및 놀이를 통해 언어 능력이 발달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됩니다.
- 사회적 기술 발달: 부모는 자녀가 사회적 규칙과 역할을 배우도록 돕는 중요한 모델 역할을 합니다.
- 문제 해결 능력 강화: 놀이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됩니다.

2. 상호작용 놀이 시작 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해야 습관이 되고,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하루에 10분~30분이라도 아동과 부모님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주변의 자극(스마트폰, 게임기 등)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부모와 자녀가 놀이를 하면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좋습니다.

3. 상호작용 놀이 시작

방에 있는 놀이매체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00아,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야, 엄마(또는 아빠)가 너와 새로운 방식으로 놀이를 하려고 해. 매주 0요일 00시부터 00분 동안 여기 있는 놀잇감으로 이곳에서 놀이를 할 거야. 이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놀잇감들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놀이를 할 수 있어. 만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 때 알려줄 거야”라고 안내합니다. 익숙해지면, “이제 우리만의 놀이시간을 갖자”라고 간단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동일수록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시간 전에 미리 확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놀이시간 중에 가겠다고 하면 한 번만 다녀 올 수 있다고 알려 줍니다. 아동이 화장실에 다녀오면 “이제 우리만의 놀이시간에 다시 들어 왔구나.”라고 말해줍니다.

놀이의 시작은 자녀로부터 시작됩니다. 놀잇감의 선택과 놀이의 방법 등을 자녀가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엔 부모에게 선택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엄마(아빠)가 선택해주기를 바라는구나. 그렇지만 네가 선택할 수 있단다.”라고 말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자녀가 하는 활동과 표현하는 감정을 부모는 언어로 표현해 줍니다. 예를 들어, 공룡으로 공격놀이를 하는 경우라면 “애가 애를 때리고 있구나.”하며 자녀의 표정을 세심히 살피고 표정에 나타나는 정서를 말해 주거나 놀이에 투사하는 감정을 말해 줍니다. 이 기법은 스포츠 캐스터가 경기를 자세히 중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녀가 말하는 것, 자녀의 정서와 표정 등을 언어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언어발달이 충분치 않은 경우, 더 자세히 더 많은 빈도로 언어표현을 하고, 언어발달이 충분한 아동의 경우엔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적 합니다.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에게 질문을 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자녀의 놀이에 방해가 됩니다. 이 시간은 철저히 자녀가 주인공이 되고, 기획자가 되며 감독자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블록을 끼우는 행동, 놀이 방법을 생각하는 모습 등을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끼우고 있구나.”, “곰곰이 생각하고 있네.”등.

자녀는 놀이를 하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놀잇감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묻는 경우, ‘이 놀잇감으로 무엇을 하는 건지 알고 싶구나. 이 시간에는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놀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고, 명칭과 단순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경우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룡의 이름을 궁금해 하는 경우 “사람들은 이 공룡의 이름을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해, 하지만 이 시간에는 네가 원하는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어.” 부모는 자녀가 혼자서 가치와 판단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와 함께 놀이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놀자고 요청하는 것도 자녀의 몫입니다. 부모에게 함께 놀자고 요청하면 완전히 함께 놀아야 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놀아 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의 주도성은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때때로 자녀에게 제한을 설정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한 설정은 놀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모와 아동을 안정하게 지켜줍니다. 또한 부모의 권위를 세울 수 있으며, 아동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사안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한설정(또한 한계설정)은 자녀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어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는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어 아동이 그 제한들을 기억하기 쉽게 합니다. 제한이 적어야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의 기분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안전,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놀이시간에서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을 잘 지키는 것
 2. 놀잇감을 일부러 부수지 않는 것
 3. 부모를 때리지 않는 것
 4. 그 외에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슬라임 활동을 싫어한다면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한 노출을 피하면 됩니다. 일상에서도 부모(또는 보호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수용한계수준이라 합니다.

제한의 설정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녀의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을 반영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또는 정서)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를 때리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화가 난 모양이구나.”

두 번째 단계는 규칙과 제한을 말합니다. 자녀에게 간단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한 행동을 말해 줍니다. 이때, 목소리는 화내지 않는 차분하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단호하게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자녀의 마음을 읽어 주고 제한 행동을 할 수 없음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제한 행동을 그만 두고 수용 가능한 다른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나를 꼬집으려는 구나, 그렇지만 나를 꼬집어서 나를 아프게 하면 안 돼.”

세 번째 단계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사람을 때릴 수는 없어. 그 대신 인형을 때릴 수는 있어.”, “나를 때릴 수는 없어. 대신 펀치백을 때릴 수는 있어.” 자신의 감정(또는 정서)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성장하는 아이들의 경우, 비언어적 표현이 먼저 출현하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대안 행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실행하였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 자녀에게 경고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제한된 행동에 대해 말하고 제한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안내합니다. 제한을 어겨 그 결과를 경험할 것인지 아닌지를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한 후, 부모는 다시 자녀가 그만두고 다른 놀이를 하도록 기다립니다. “엄마를 때릴 수는 없다고 말했지. 엄마를 때리면 오늘은 더 이상 놀이를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했음에도 자녀가 제한을 어긴다면 부모는 다시 한 번 제한 행동을 말해 주고 경고를 실행합니다. 역시나 화난 목소리가 아닌 차분하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특별놀이 시간이 끝나기 전, 종료에 대한 안내는 세 번 합니다. 끝나기 10분 전에 “00아, 오늘 놀이시간은 10분 남았어.” 5분전에도 이와 같이하고, 1분 전에는 정돈을 알립니다. “놀이시간이 끝났다. 이제 놀잇감을 정돈하자.”라고 밝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동은 더 놀고 싶더라도 하고 있는 놀이를 끝내야 함을 압니다.

특별놀이가 진행되면서 아이가 더 놀고 싶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주되, 놀이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더 놀고 싶었구나. 그렇지만 오늘 놀이시간은 끝났어. 다음시간에 다시 놀 수 있단다.”라고 말하고 부모는 일어서서 그 공간에서 나간다는 행동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아이가 목표행동(놀이를 마치고 공간을 나가는 것)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아이가 선택하기에 유리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어린 아이일 경우, 안고 나갈까? 업고 나갈까? - 아이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선택지와 같은 기법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번에 잘될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점차 나아질 것이므로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동의 마음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내는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평소 아동의 놀이 및 활동, 분위기 등에 관심을 두고 세심히 살피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놀이는 그들의 삶이며, 그들의 사고와 정서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그들의 호기심과 도전, 현재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익숙해지도록 연습하기를 반복합니다. 또한 놀이는 그 안에서 얻는 즐거움과 해방감으로 실수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활동이며 그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부입니다. 놀이를 통하여 그들은 스스로 터득하고 알아 가는 기쁨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놀이 안에서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는 모든 아동의 삶의 기본이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대상과의 정서적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정서중심(또는 아동중심) 30분 놀이의 꾸준한 실천은 보다 안정적인 반응적 상호작용의 관계 연습과 아동의 자신의 정서인식·표현·조절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서조절력을 바탕으로 자존감과 신뢰로운 관계 안에서 획득한 자기 확신감을 형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4. 가정 프로그램 제안

가정에서 아동과 함께 해볼 수 있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활동을 소개합니다.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NO.1

우리가족 꾸미기



00아 멋지다.
이번에는 보호자를
해보는 건 어때?

00아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고 싶니?

도움되요 : 라인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놀이해요.
미용사, 손님의 역할을 모방하여 표현해요.

준비해요 : 안전 손거울, 놀이용 헤어드라이어, 빗, 헤어 롤, 머리띠, 머리끈 등

이렇게 해요 :

1. 미용실에서 볼 수 있는 소품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살펴본다.
2. 아동이 헤어드라이어, 빗, 가운, 롤 등 소품을 이용하여 손님이나 미용사의 흉내를 내본다.
3. 아동이 역할을 바꾸어서 놀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한다.
4. 빈 화장품 통, 분첩 등을 이용하여 화장하는 흉내를 내거나 똑같이 머리띠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놀이한다.

비치볼 주고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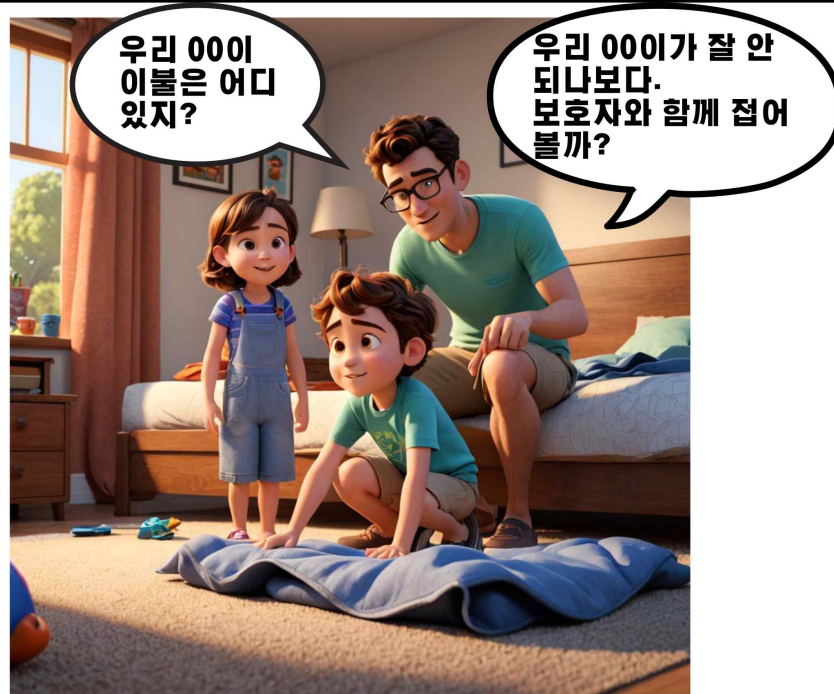
도움되요 : 보호자와 마주 보고 신체활동을 한다.
손과 팔을 이용하여 비치볼을 던지고 받아본다.

준비해요 : 비치볼

이렇게 해요 :

1. 비치볼을 자유롭게 탐색하여 굴러 보거나 던져본다.
2. 보호자가 한팀이 되어 비치볼을 주고받아 본다.
3. 주고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두 사람 간의 거리를 넓혀서 주고받아 본다.
4. 보호자와 주고받기가 익숙해지면 친구와도 자유롭게 비치볼을 주고 받아 본다.

이불정리하기



도움되요 :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스스로 개인 침구 정리를 시도한다.

준비해요 : 개인 침구

이렇게 해요 :

1. 커튼을 치고 잘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2. 개인 이불에 눕도록 유도한다.
3. 조용한 음악을 들려주며 아동의 개별 수면 습관을 배려해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다.
4. 아동의 자는 모습을 살피며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5. 보호자가 이불과 베개를 정리할 때 아동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5. 결론

1. 자녀 주도의 놀이 시간: 부모는 자녀가 놀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세심히 읽고, 언어로 표현하여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놀이의 과정에서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부모는 이를 지원하며, 자녀는 자신감을 얻고 자아를 확립합니다.
 2. 부모의 역할: 부모는 자녀의 놀이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자녀의 행동을 세심하게 언어화하여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모는 놀이 중에 제한을 설정할 때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녀는 안전하고 규칙적인 환경에서 스스로 행동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제한을 설정하되, 과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자녀가 자유롭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3. 놀이 시간의 안정성: 특별 놀이시간은 자녀와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부모는 이를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 조절력, 자기 인식,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4. 제한 설정과 대안 제시: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반영하며 제한을 설정하고, 자녀가 그 제한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녀가 규칙을 어길 때는 대안을 제시하고, 경고 후에는 자녀가 스스로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모는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녀를 지도하며, 놀이시간 종료 전에는 점진적으로 시간을 알리고 놀이 종료를 준비합니다.
 5. 꾸준한 실천의 중요성: 이와 같은 정서중심 놀이는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자녀는 점차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이시간은 아동에게 중요한 자기 확신을 주며,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결론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특별 놀이시간은 아동의 정서 발달, 자아 존중감, 자기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부모는 이 시간을 통해 자녀의 놀이를 지원하고, 제한을 설정하면서도 자녀의 자율성과 정서적 표현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놀이 시간은 자녀가 안전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부모와의 신뢰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참고자료

- 배선미, 30분 놀이의 기적, 도서출판 좋은땅, 2022
- 임미정, 내 아이랑 뭐하고 놀지?, 학지사, 2019

보호자를 위한 허리 운동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일 시	2024년 12월 17일~2024년 12월 19일
장 소	온라인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자를 위한 허리 운동

1. 허리 통증의 개요

허리 통증은 대부분의 사람이 직업과 부주의, 운동부족 등으로 허리를 다칠 확률이 높다. 허리뼈는 상체를 지지하는 동시에 체중의 무게를 골반과 하지에 골고루 전달시키는 생체역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체의 척추는 목뼈 7개, 등뼈 12개, 허리뼈 5개, 엉치뼈 5개, 꼬리뼈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시상면(얼굴을 측면에서 바라본 상태에서 수직 방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른 단면)에서 살펴보면 목, 허리뼈는 얼굴쪽으로 볼록하고 등, 엉치뼈는 등쪽으로 볼록한 형태이며 허리뼈는 인체에서 가장 큰 체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척추뼈 중에서 가장 크다. 척추뼈 사이에는 추간판(디스크)이 있는데 자세 불량, 외상, 등으로 추간판이 제자리를 벗어나 허리 통증을 일으킨다. 이것을 추간판 탈출증(흔히 ‘디스크’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2.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 및 진행

초기증상

허리만 아프다.

앉아 있을 때 허리 통증이 심해지며 서 있으면 완화된다.

아침에는 다리가 뻣근하고 활동하면 괜찮아진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펼 때 허리가 아프다.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를 펴기 힘들다.

악화증상

허리가 아프면서 척추가 비뚤어지고 옆굽음증(측만증)이 생긴다.

허리만 아팠는데 허리와 다리가 동시에 아프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면서 다리가 더 아프기 시작한다.

대변을 보거나 기침, 재채기할 때 아프다.

누워서 다리를 올리면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생긴다.

증상의 진행

초기엔 추간판이 중앙으로 빠져나와 경막자극으로 요통만 나타난다. 허리를 굽히거나 펼 때 통증이 있고, 앉아 있으면 더 아프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

뒤가로(후중)인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후외측으로 빠진다. 요통과 다리 통증이 같이 나타난다.

↓

후외측으로 완전히 빠진다. 요통은 사라지고 다리로 내려가는 관련통(referred pain)만 나타난다.

3. 추간판 탈출증 자가 진단법

다음 중 3가지 이상에 '예' 라고 대답하면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다.

- (1)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르거나 팔자걸음, 안짱걸음을 걷는다.
- (2)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려 발을 직각으로 올렸을 때 다리 길이가 차이난다.
- (3)반듯하게 누워 허리 부분에 손을 넣으면 잘 들어가지 않는다.
- (4)한쪽 바짓단만 바닥에 끌리거나 한쪽 신발 밑창이 더 닳는다.
- (5)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가 시큰거리거나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
- (6)까치발을 하고 엄지발가락으로 걸었을 때 힘들거나 통증이 있다.
- (7)이유 없이 다리가 아프면서 힘이 빠지고 다리의 근육이 마르는 느낌이 든다.
- (8)허리를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한다.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돌리기가 매우 힘들다.
- (9)심하게 기침을 하면 허리, 엉덩이, 다리 쪽에 전기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
- (10)과거보다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4. 예방 운동 방법

1)



누워서 양 무릎을 세운다. 배의 근육을 수축시켜 허리를 바닥에 대고 그대로 힘주고 5초간 유지한 다음 완전히 힘을 뺀다. 5회 반복한다.

2)



누워서 배의 근육을 수축시켜 허리를 바닥에 서서히 붙이고 그대로 힘을 주고 양쪽 엉덩이에 힘을 준 채 유지했다가 서서히 힘을 뺀다. 5초간 쉬고 5회 반복한다.

3)



누워서 양 무릎을 세운다. 머리를 가슴쪽으로 들어 올리고 양손은 무릎을 향하여 뻗는다. 그대로 유지하고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온다. 5회 반복하고 점차 횟수를 10 회로 늘린다.

4)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천천히 팔꿈치를 펴 상체를 일으켜 5초 유지 후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온다. 5회 반복한다.

5)





네발기기 자세로 배에 힘을 주어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 5초 유지 후 천천히 배에 힘을 풀며 허리가 오목한 상태로 5초 유지한다. 5회 반복한다.

6)



네발기기 자세로 왼쪽 손과 오른쪽 다리를 바닥으로 20~25cm까지 동시에 들고 5초 유지한다. 반대쪽 팔과 다리도 진행한다. 5회 반복한다.

5. 통증 시 운동

1)허리가 콧콧 쑤실 때



- 양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다.
- 양손을 허리와 엉덩이 중간부분에 얹는다. 손가락은 아래를 향한다.
- 얼굴을 들어 천장을 보여 몸을 있는 힘껏 뒤로 젖힌다.
- 천천히 곧은 자세로 되돌아온다.
- 10회 반복한다.

2)허리가 뻣뻣할 때



- 양 무릎을 세우고 양쪽 다리를 붙이고 눕는다.
- 양 팔을 벌리고 양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내려놓으며 머리는 왼쪽으로 돌린다.
- 양쪽 어깨는 바닥에 붙인 상태를 유지한다.
- 반대쪽도 진행한다.
- 한 방향에 5회씩 실시한다.

3)허리와 골반이 함께 아플 때



- 양 무릎을 세우고 눕는다.
- 배꼽을 6시, 12시로 움직인다.(골반을 각각 3시와 9시로 생각한다.) 5회 반복한다.
- 배꼽(골반)을 다른 '시간대'로 움직인다. 1시에서 7시, 2시에서 8시, 3시에서 9시, 4시에서 10시, 5시에서 11시 사이를 오간다.
- 순서를 거꾸로도 진행한다.

4)허리가 삐딱할 때



- 양손을 '만세' 상태로 앞드려 눕는다.
- 왼팔과 오른쪽 다리를 8~15cm 들어 올려 5초 유지한다.
- 이때 치골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 반대쪽 팔다리도 진행한다.

6. 결론

척추는 사람의 목과 등, 허리, 엉덩이, 꼬리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를 이야기한다. 척추는 시상면에서 바라볼 때 굽어져있는 만곡을 형성하는데 목뼈와 허리뼈는 전만, 등뼈와 엉치뼈는 후만을 이룬다. 이러한 만곡 상태가 소실된다면 추간판이 탈출하여 허리에 통증을 일으킨다. 척추의 만곡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여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로 생활함으로써 중력을 균등히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 예방 운동을 통해 척추의 만곡을 바르게 유지해야한다. 배와 허리, 골반 주위의 근력 강화 및 스트레칭을 틈틈이 진행하여 허리 통증을 예방한다. 이미 통증이 생겼다면 본 교육에서 소개한 것처럼 상황에 맞는 운동을 적용하는 것을 권유한다.

참고문헌

1. 박지환 외. 근골격계 질환별 물리치료. 현문사

2. 장정훈 외. 운동치료총론. 영문출판사

무발화 아동의 언어재활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일 시	2024.12.18.~2024.12.20
장 소	언어재활실



남동강애인종합복지관

무발화 아동의 언어재활

■ 들어가며

무발화(nonverbal)이란 DSM-5에서는 구어가 전혀 없거나, 있어도 드물게 사용하고, 자발적인 말이 전혀 없거나 제한되어 한 단어 또는 반향어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 말소리를 전혀 못내는 아이
- 말소리를 내지만 사용을 못하는 아이

자폐범주성 장애, 지적장애, 말실행증, 발성기관 이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력 및 시각문제, 신경발달장애, 발성기관의 문제, 심리적 문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문을 트이기 위해서 몸의 움직임, 표정, 소리, 눈맞춤 등 비언어적 기술이 발전해야 합니다. 공동주의와 같은 언어 이전의 비언어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자료를 통해 무발화 아동의 말문을 트이게 하기 위한 조건과 언어촉진 과정 및 전략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참고자료로 가정에서 무발화 아동이 매일하면 좋은 구강운동 및 말놀이를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 무발화 아동

1. 무발화 아동, 말을 하게 될까요?

- 적절한 지원과 개입으로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지만, 다른 아이들은 보완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게 될 수도 있음
- 말을 하게 된 대부분의 아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장애가 덜하다는 것을 발견함
- 반향어와 반복적인 행동의 정도, 제한된 관심사가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인지와 사회성에 따라 말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언어 이전기의 비언어적 기술(눈맞춤, 공동주의, 동작모방, 표정, 제스처 사용 등)을 습득한 아동에게서 가능성이 큼

2. 말을 하기 전에 갖춰야 할 언어능력: 비언어적 기술

1) 몸의 움직임: 흥분을 표현하기 위해 몸을 흔들기, 졸릴 때 하품하기, 원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향해 손뼉기, 무관심을 나타내기 위한 고개 돌리기, 표정 제스처 및 표정 사용,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소 짓기, 놀라거나 겁에 질렸을 때 눈을 크게 뜨기, 무관심을 나타내는 중립적인 얼굴

2) 소리: 불편함을 표시하는 울음, 즐거움을 표시하기 위한 웅얼이나 웃기, 싫다는 표시로 비명지르거나 울기

3) 눈 맞춤: 물체나 사람을 바라보기, 특히 원하는 것 바라보기, 무관심을 나타내는 고개돌리기, 관심없는 사람이나 사물 옆으로 몸 움직이기, 관심없는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몸 돌리기, 상대방의 손을 잡고 자기를 위해 뭔가 하도록 하기, 원하는 것이나 도움 요청할 대상 가리키기

■ 자발적 움직임은 말소리 내기의 시작

1. 말하기의 시작은 움직임

- 움직임과 발성은 별도가 아니므로 의도적인 발성을 장려해야함
- 구강움직임, 발성놀이 등이 말에 필요한 입에 대한 인식, 자신의 구강기관을 탐색
- 두살이나 세 살까지 말하기 어렵다면 먹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컵으로 우유마시기, 고체음식 먹기 등이 도움이 됨
- 움직임은 반복적인 행동이나 자기자극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대체행동을 제공할 수 있음(강력한 감각압력이 필요한 끊임없이 움직이기 바쁜 아이에게 걷기, 달리기, 점프하기, 굴리기, 그네타기 등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됨)
- 조용하거나 반응이 없는 아이의 주의력과 참여도를 높여 각성상태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줌

2. 운동기술이 아니라 충분한 움직임이 중요

- 운동능력이 낮아도 언어를 배울 수 있으나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함
- 아동들의 움직임은 일상에서 그네를 밀어주기, 함께 달리기, 트램폴린 뛰기 등

3. 움직임도 아이의 관심사 따르기

- 아이가 소통하고자하는 것을 관찰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 아이의 동작이나 소리를 따라하거나, 의도를 해석하거나 언급하면서 따라가기
- 그네를 타거나, 함께 달리거나, 트램폴린을 뛰거나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하기
- 아이가 관심을 보이면 즉시 반응을 보여주기

4. 움직이면서 상호작용하기

- 움직이는 것을 따라하면서 같은 동작을 하고 눈빛으로 교감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시작임
- 스킨십을 하면서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노는 것이 좋다는 즐거운 상호작용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함

• 눈맞춤을 유도하는 방법

- 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눈을 봅니다.
- 나.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면 부모는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고, 부모의 입을 보면서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 시각적인 단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다. 움직이는 신체놀이도 눈맞춤을 하는 시간과 빈도를 늘려주세요

라. 눈맞춤이 잘 안되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아이가 원하는 물건을 건네줄 때 엄마의 눈 주위를 터치하게 하고 그 순간에 물건을 줍니다.

마. 아이가 상대방의 눈을 보는데 중요하고 터치만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 눈을 맞추고 보는 그 순간에 강화물을 제공하고 잘 안되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엄마의 눈가를 터치파고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합니다.

• 눈 맞춤을 위한 다양한 놀이

가. 까꿍놀이: 커튼 뒤에서, 목욕을 시키거나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산책할 때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아이의 눈 높이 또는 반대편에 앉아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순 뒤에 얼굴을 숨기고 시행

나. 눈 주위에 관심 끌 만한 것 부착하기: 우스꽝스러운 안경, 뼈에로 코걸이, 스티커 등을 눈가에 부착하기

다. 눈길을 끄는 장난감 얼굴에 가까이 대기: 딸랑이, 빼걱거리는 장난감 등 알록달록하거나 시끄러운 장난감을 얼굴에 대기, 끼워맞추는 퍼즐, 블록, 고리 쌓기 등의 장난감 조각을 마주치거나 두드려서 주의를 끌기

라. 장갑 또는 손가락 인형: 손가락 인형, 장갑 아니면 색깔 있는 양말을 손에 끼우고 얼굴 가까이 흔들어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도록 유도하기

마. 함께 거울보기: 거울을 보면서 재밌는 표정을 짓거나 소리를 내기

바. 준비! 땅!: 공놀이, 비눗방울불기, 자동차 놀이 하면서 눈맞춤 유도, 준비라고 말하고 잠시 멈추고 상대방을 쳐다보면 땅! 말하고 놀이 진행

사. 공놀이: 공 던지고 받기, 패스하기, 굴리기, 차기를 하면서 동작을 하기 전에 눈을 마주칠 때까지 기다렸다 눈 마주치기

5. 모방의 시작은 움직임 모방

-걷기, 춤추기, 점프하기 등 큰 몸동작

-손벽치기, 팔흔들기, 배두드리기, 발을 쿵쿵거리기

-움직임이 어려워보이거나 거부감을 보이면 이미 알고 있는 기술과 배우고 있는 기술을 번갈아 시도하기

6. 말을 줄이고 다양한 소리 들려주기

-무발화 단계에서 다양한 문장으로 하루종일 설명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소리처럼 의미 없이 들릴 수 있음

-의성어나 의태어처럼 재미있고 쉬운 소리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들려주는 것이 중요함

-성인도 무의식 중에 ‘아!, 어!, 와!, 응!, 쿵!, 아이쿠, 예구, 끄응’ 과 같은 여러 가지 소리를 냄

-아이가 움직일 때 단어를 말하기보다 상황에 적절하게 나오는 소리 내기, 웃는 소리, 우는 소리, 떼쓰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하품, 코골이소리, 후~ 불기 같은 초기발성을 유발할 수 있는 소리가 좋음

-여러가지 놀이상황에서는 ‘우와, 우, 와, 이야~’와 같은 감탄사를 많이 들려주기

- 장난감놀이를 할 때 뽕뽕(차), 뽕뽕뽕(소방차), 뽕뽕(기차)와 같은 소리와 동반된 활동을 하면서 대상물과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게 해주기
- 물을 마실 때 ‘꿀꺽꿀꺽’ 마시고, ‘휴~’ 라고 만족한다는 표정을 보여주기
- 새소리, 강아지소리 등 주변의 동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 짹’, ‘멍멍’ 등 자극주기

■ 동작모방

1. 초기의사소통은 동작을 사용한 의사소통
 - 구어(말)만 강요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망칠 수 있음
 - 동작을 사용한 의사소통(요구하기 시 손을 모으기)을 먼저 배움
2. 모방은 의사소통능력의 기초
 - 모방: 다른사람이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따라하는 것
 - 모방이 되려면 공동주의(같은 것을 보는)가 가능해야하며,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고, 감각통합발달도 이루어져야 함, 눈맞춤과 인지발달도 이루어져야함
 - 동작과 제스처를 따라할 수 있다면 말을 따라하는 데 성공할 확률이 높음
 - 몸짓이나 소리를 따라하여야 구어(말)도 따라함
3. 언제부터 모방을 시작하나요?
 - 신생아: 표정을 모방함
 - 생후6개월: 젖병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이 물체를 가지고 모방하는 법을 배움
 - 첫돌전: 까꿍놀이와 같은 사회성게임을 하며 손뼉치기, 불기, 입술붙이기, 몸짓과 운동동작을 먼저 모방
4. 모방하기의 단계
 - 1) 부모가 먼저 아이 모방하기
 - 아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행동이나 어찌다 튀어나오는 소리를 모방
 - 수다스럽게 말하기보다 ‘ 짹, 빙빙, 뽕뽕’처럼 간단하고 쉬운 핵심단어만 사용
 - 자동차가 떨어지면 엄마가 ‘짹’ 하고 소리내기, 돌아가는 장난감 놀 때 ‘빙빙, 빙글빙글’ 말하며 돌리기 행동과 소리를 연결시키기
 - 2) 아이가 부모 모방하기
 - 새로운 행동을 보여주고 물건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게 하기
 - 동작을 익힐 때까지 반복하고 아이가 따라하기를 기다리고, 어떤 동작을 잘하게 되면 복잡한 동작으로 넘어가기
 - 3) 상호 모방으로 의사소통하기
 - 발화 이전에는 상호 모방이 목표
 - 공동주의, 공동활동, 주고받기, 제스처로 의사 표현하기 연습과정
 - 4) 모방하기 일반화
 - 아이가 기술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형과 상황을 사용하여 여러번 연습하기

-일부 아이는 학습한 행동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모방하는 지연모방이 있을 수 있으나 반복은 속달로 이어지므로 계속 모델링하기

5. 사물을 이용한 동작모방

-반복되는 간단한 동작을 블록, 자동차, 트럭, 호루라기, 악기, 인형, 공, 컵, 책과 같은 장난감이나 실제 물건을 이용하여 모델링해주며 블록 쌓기, 공굴리기, 호루라기불기, 아기인형에게 젖먹이기, 책 열기나 닫기

-사물을 이용한 모방: 자동차 자동차 운전하기, 음식 먹는척하기, 컵으로 물마시기, 전화기 귀에 가져다 대기, 양말신기, 양치질동작, 신발신기 등

6. 사물없는 동작모방

-간단한 신체동작: 박수, 만세, 손흔들기, 춤추기, 불기 등

-쉬운 제스처: 손흔들기, 뽀뽀하기, 빠이빠이, 찜찜

7. 의사소통을 위한 간단한 제스처 모방

1) 간단한 제스처 모방

a. 사랑해요: 손동작 하트

b. 안녕 빠이빠이: 손흔들며 인사하기

c. 메롱: 혀 내밀기

d. 잉잉잉 울기 동작: 두 손 눈 양옆으로 왔다갔다

e. 하이파이브: 상태 손과 손뺑 마주치기

f. 포인팅: 손으로 가리키기

g. 끄덕끄덕: 고개 위아래로 움직이기

h. 도리도리: 고개 좌우로 천천히 몇 번 흔들기

2) 제스처 예/아니오

-동작모방을 가르치기(고개 끄덕임 ‘네’, 고개를 젓는 것 ‘아니’)

-아이가 네/아니오로 반응하는 습관 만들기(처음엔 제스처로 진행)

-물줄까? 물어볼 때 고개를 끄덕끄덕, 엄마는 아이를 몇 초 마주치고 요구 들어주기

-이러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 구어로 네, 아니, 안 해/아 내/ 등을 끌어주기

3) 요구하기

-아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예측하기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을 먼저 관찰

-요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사물을 손으로 가리키는데 주지 않으면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며 아이가 눈을 쳐다볼 때 물건을 주기(청자인식)

-요구하기 동작을 익히면, 손을 모으거나 가리키기 행동을 모델링해주기

-긍정적인 요구행동에만 강화하고 울기나 떼쓰기와 같은 행동에는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야 함

-말소리를 잘 낼 수 없거나 물건을 달라고 제스처나 말로 표현하지 않고 뺏으려 하거나 상대방을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줘’ 라고 하는 아이, 냉장고로 손을 끌

고 가는 아이에게는 요구하기 손동작을 알려주기

4) 지시하기: 포인팅 가르치기

- 놀이상황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천천히 가져와 아이의 손을 잡고 장난감을 가리키게 알려줌(몇회 연습)
- 장난감을 높이 들어올려 아이가 장난감을 손으로 가리키도록 기다리기
- 잘 하지 않으면 모델링 해주고 기다리기
- 포인팅 해야하는 상황을 재현해서 놀이상황에서 포인팅 반복적으로 연습하기

8. 표정과 입모양 모방

- 과장되게 놀람, 슬픔, 행복, 두려움, 시범(거울보고 하거나 사진을 보고)
- 정교한 입움직임(미소짓기, 입꼬리 올리기, 입술 부딪히기, 뽀뽀하기, 혀 들어올리기, 입벌리고 웃기, 뽀뽀하면서 손바닥으로 땀다 붙이기, 하품하기, 입벌리고 턱 내리기, 입을 다무는 동작 등 등)

■ 생리적 발성 끌어내기

1. 생리적 발성

- 무발화 아이들도 ‘아’나 ‘어’ 같은 몇몇 소리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반사적 발성 이끌어내기(재채기, 하품, 웃음, 울음 등)
- 에취, 아, 하, 하하, 앙, 응

2. 생리적 발성 끌어내기

- 아이가 낸 소리를 즉각적으로 모방하여 강화하고 아이가 다시 따라하는 것을 관찰하여 기다리기
- 서로 소리를 주고받기(의도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기 목소리를 통제하도록 하는 과정임)
- 비명과 같이 통제 불능 상태일 경우 의도적 발성을 시도하지 않아야하며 소리지르거나 비명과 같은 발성에는 반응하거나 강화하지 않아야 함
- 발성을 끌어내기 위해 억지로 울리는 것은 금물이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시작하면 나중에 아이가 말을 해도 의사소통 의도가 매우적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사소통이 아닌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여 또다른 어려움 겪을 수 있음
- 기침소리 가르치기
- 소리의 높낮이, 음량, 지속시간을 다르게하여 다양한 소리 유도(에-----취, 에ㄱ, 에ㅎ, 에츠, 아츠, 아취, 에---취히, 에ㅎ응, 애흥, 아흥, 어허, 어-호- 등)하며 시범을 보여주고 목소리 조절력과 협응력을 기름
- 간지럼 태우기

3. 발성 단계에서 의성어 의태어 활용

-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들려주고 따라하기 반응을 유도
- 아이가 내는 모든소리에 능동적으로 반응(예: 쉬하는 소리 ‘쉬’, 물내리는 소리

- ‘쌩아’,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쿵’ 등)
- 아이에게 따라해보라고 요구하지는 말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들리면 바로 그소리를 더 크게 따라하여 격하게 칭찬하고 기뻐하기
- 콧노래 부르기
- 마이크, 나팔, 양동이, 플라스틱 그릇 등 소리를 증폭시키는 물건을 사용

■ 음성모방

1. 아이가 내는 소리 모방하기

- 아이의 소리 모방하는 방법
 - 음성모방단계에서는 아이가 내는 소리를 부모나 치료사가 적극적으로 모방
 - 아이가 내는 소리를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다시 강조해서 따라하기
 - 아이가 자연스럽게 부모의 소리를 따라하도록 유도하기
 - 상황에 맞게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고 음성모방을 유도하기
- 생리적 발성 모방하기
 - 아이의 기침소리, 하품소리, 우는 소리, 웃는소리, 응가하는 소리, 후 부는 소리, 허차는 소리와 같은 생리적 발성에서 나오는 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어야 함
 - 음성모방은 자기의 목소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

2. 감탄사 음성 모방

- 놀이를 할 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 발성 모방 유도 (어-오, 와우, 우와, 휘, 예이, 우, 얄, 아야, 오우 등 다양한 억양과 음량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감탄사로 시범)

3. 의성어와 의태어 모방하기

- 재미있고 쉬운 소리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명명, 야옹, 꿀꿀, 짹짹, 냇냇, 치카치카, 쉬, 엉엉, 에취, 줄줄, 헉헉 등)
- 소리를 증폭시키는 도구(갈대기, 마이크, 종이타울의 심지, 양동이 등)를 사용하여 모방놀이

4. 소리모방단계

- 동작과 소리모방단계
 - a. 초기단계: 반사행동(울기)
 - b. 1단계: 엄마가 아이를 먼저 모방, 아이가 다시 엄마를 모방하는 과정
 - c. 2단계: 아이가 내는 소리를 알고 있는 엄마가 ‘빠빠’ 하면, 아이가 따라함
 - d. 3단계: 새로운 소리나 동작을 모방
 - e. 4단계: 메롱이나 윙크처럼 자기가 볼 수 없는 것도 모방
 - f. 5단계: 기억해서 스스로 표현(으쓱으쓱 동작을 많이 해본 아이는 곰세마리 그림을 보면 으쓱으쓱하기도 함)

5. 말소리 모방의 순서와 난이도

- 입술을 사용하지 않는 모음 ‘아, 에, 이, 오, 우’ 모방

- 입술소리: 바, 빠, 파, 마, 암, 압(입술을 붙였다 뗌)
- 혀 앞쪽에서 나는 소리: 나, 다, 타, 따(혀를 살짝 보이게 함)
- 혀 뒤쪽에서 나는 소리: 가, 까, 카, 앙(입을 크게 벌리고 턱을 내려 혀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
- 음소, 음절수, 받침유무 등이 많아지거나 길어지거나 복잡할수록 어려워므로 음소가 적은 쉬운 음절위주로 알려주기

6. 한음절만 따라하는 아이

- 1) 단어의 첫글자인 한음절만 발음, 말이 길어지면 발음이 안 되는 아동
 - 쉬운 말소리를 자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다양한 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여 모음덩어리(아에이오우), 자음과 모음으로 된 재미있는 소리(빠까추 다따타 가가카 시지추) 내는 것이 도움이 됨
 - 같은 음절만 반복하여 길이를 늘이는 연습(빠빠, 맘마, 치치, 뽕뽕, 빼빼 등)

2) 단단어로만 말하는 아동

- 쉬운 말소리로 구성된 2음절 문장 유도(엄마 가, 아빠 와, 멍멍 쥐, 아기 쥐 등)
- 이미 잘하고 있는 소리나 단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연습(엄마가를 잘하고 있다면 아빠가, 오빠가와 같은 형태로 연습)
- 자음과 모음을 따로 발음하여 합치기 /가/ 어렵다면 /아-그아/ /가/

7. 입모양(턱) 보고 말소리 따라하기

- 발음을 지적하지 말고 말소리 내는 행동에 칭찬하며 반복연습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끌기

■ 다양한 말소리 끌어내기

1. 현재 가능한 소리에서 다양한 말소리 끌어내기

2. 말소리와 의미있는 낱말과 연결하기

- 행동모방과 음성모방이 되면 행동이나 말소리를 ‘의미’ 있는 낱말과 연결
-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능적인 단어 사용
- 기능적 요청(켜다, 끄다, 나가다, 와, 가, 봐, 하지마, 도와줘 등)이나 명령을 사용하는 연습
- 좋아하고 관심있는 것이 초기 낱말에 적합(까까, 공룡, 마이쥬 등)
- 좋아하는 사물에 동사를 추가하여 두단어 발화 연결(까까 먹어)

3. 단서 주고 기다리기

1) 청각, 시각, 촉각 등 다양한 단서의 도움을 받아 음절을 모방

- 물을 가리키며 ‘물’ 말하고 모방하게 하기

2) 시각적 단서만 사용하여 음절을 모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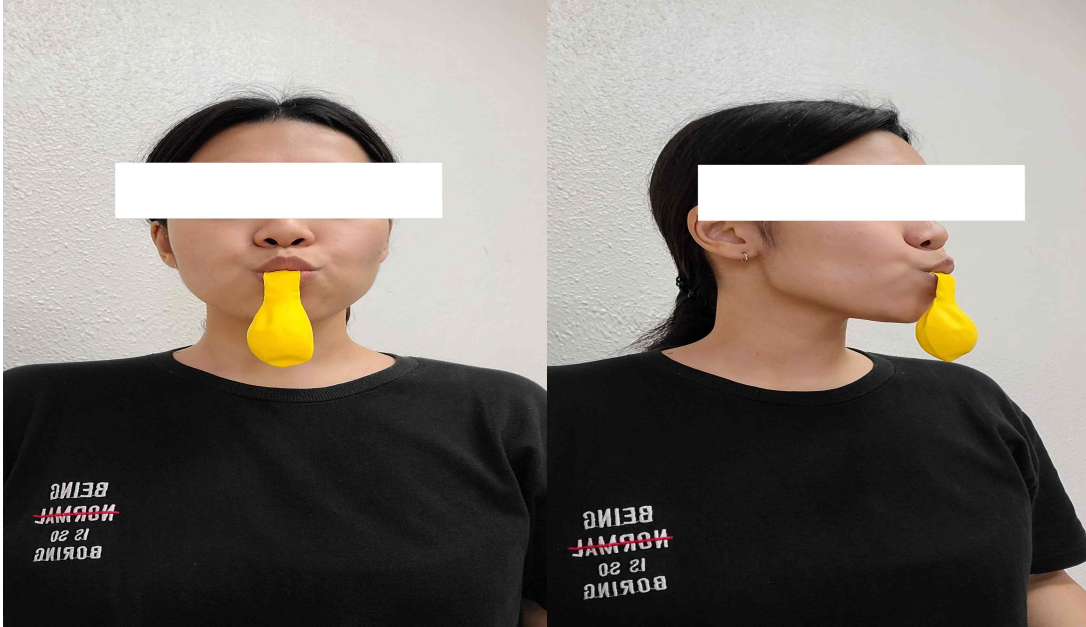
- 물을 보여주고 대답하지 못하면 5초 기다리기
- ‘우’ 라고만 말해도 칭찬해주고 물로 간주하여 즉시 반응하기
- 아이의 말을 듣는 과정이 중요하며 아이의 말을 집중해서 듣기

- 3) 입모양 또는 제스처와 같은 시각적 단서만으로 음절 모양을 자발적으로 산출
 - 물을 보여주었는데 5초동안 기다려도 말하지 않으면 엄마가 입을 벌리고 ‘우’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 4) 아무런 단서 없이 음절 모양을 자발적으로 산출
 - 자발적인 말이 나오는 성공경험하기
4. 현재 가능한 제스처에서 말 끌어내기
 - 쥐(주세요)
 - 동작모방에서 ‘쥐’ 배웠다면 제스처와 말을 같이 사용하거나 말만으로 요구하기
 -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손을 모아서 내밀어봐’ 말하면서 손을 잡고 구체적인 동작을 알려주고 스스로 하게 기다리기
 - ‘주세요’보다 ‘쥐’를 먼저 가르쳐주는 것을 권장
 - 요구하기(이거): 아이가 원하는 것을 직접 꼭 가리키며 ‘이거’ 라고 말해주기
 - 예, 아니오 대답하기
 - 네 아니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동기를 부여
 -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네’
 - 아니 라고 대답할 수 있게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니’ 모델링
 - 실제로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줄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 대답가능한지 확인
5. 말로 의사소통하기
 - 빵을 엄마 입 가까이 대고 ‘빵’ 이라고 말하고 기다리기
 - 빵이라고 따라서 말하지 않으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다가 천천히 아이에게 보여주며 반응 기다리기
 - ‘빵’이라고 다시 말하면서 빵을 아이에게 주기
6. 노래하며 발성놀이
 - 노래와 동작이 있는 노래는 아이의 인지발달에 도움
 - 가사 번갈아 부르기

■ 참고자료: 무발화 아동이 매일 하면 좋은 구강운동 & 말놀이

1. 입술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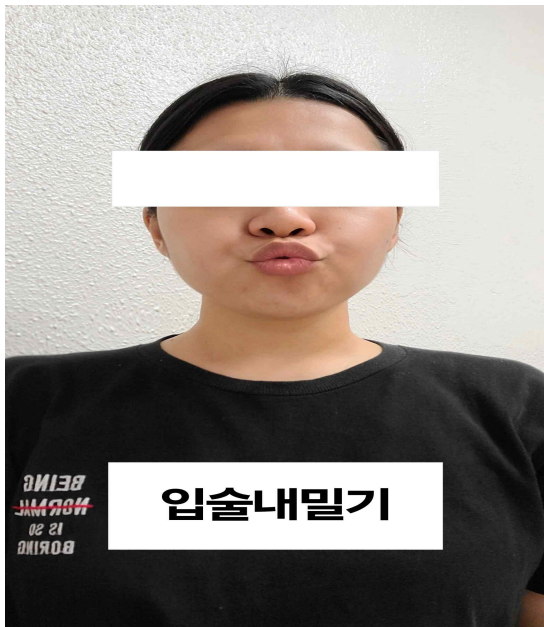
-입술에 물기 (풍선)



-양볼 부풀리기(풍선)



-입술내밀기



-입술 손으로 잡고 마사지하기



2. 말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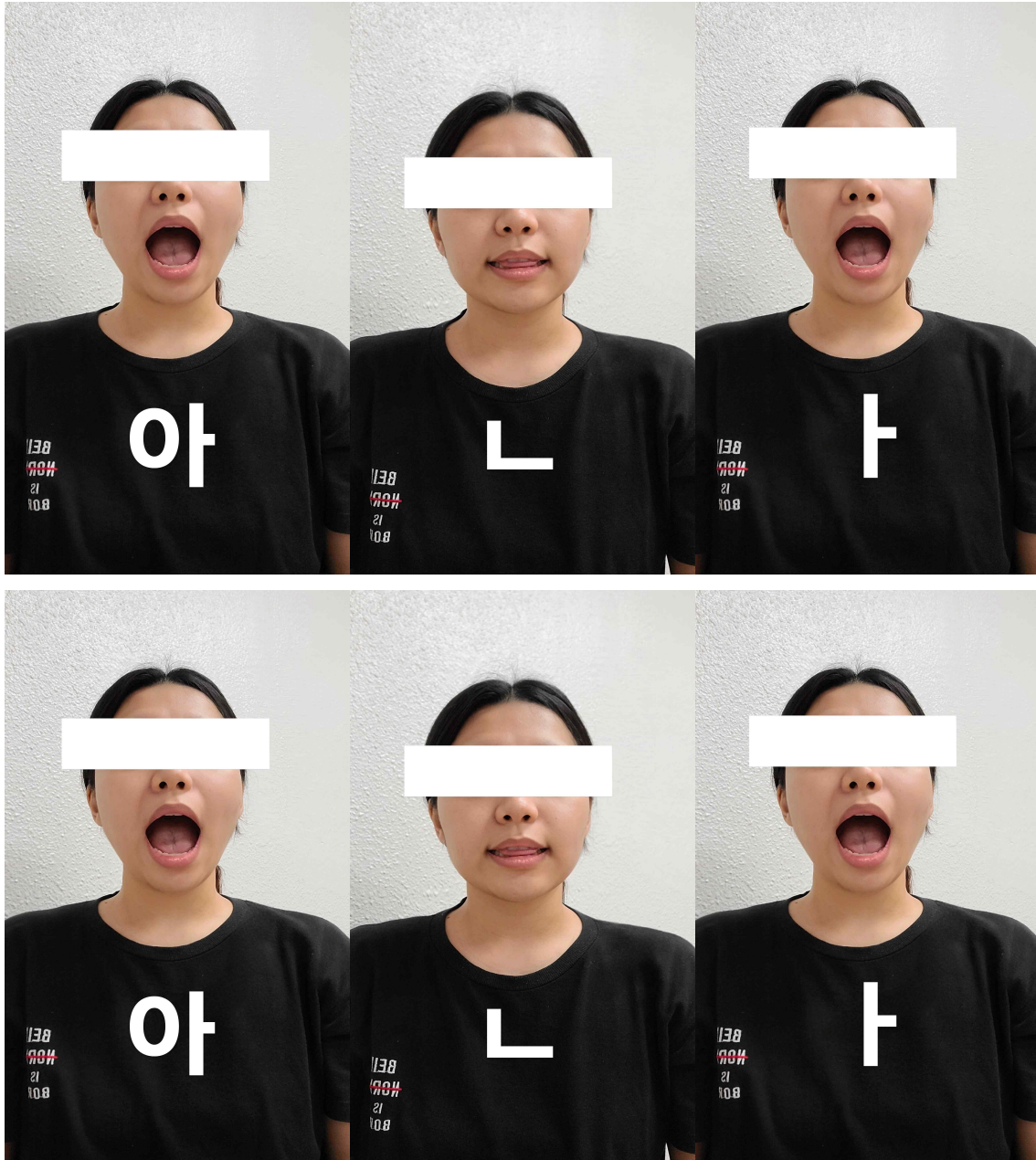
-오이오이



푸~



-아나아나



-음아음아



[출처] 2024, 무발화 말문 트기: 말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언어치료 극복 전략과 지침, 허란, 아이원

2024년 열린일터 사업 및 운영지침 교육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24년 1월 11일 (목)
장 소	대면 및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2024년 열린일터 연간 사업 일정

- 시무식 : 1월 8일(강당)
- 등산 : 5월, 9월, 10월
- 여행 : 4월 24일~26일(장소 미정/장소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비루고개축제 : 5월 11일(토)
- 여름휴가 : 7월 29일~8월 2일(예정)
-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의날 행사 참석 : 10월중(날짜 미정)
- 남동송년예술제 : 12월 11일
- 종무식 : 12월 27일

II. 2024년 일일 시간표

오 전	10시 00분 ~ 11시 00분	프로그램 및 작업(근로시간)
	11시 00분 ~ 11시 20분	쉬는시간
	11시 20분 ~ 12시 20분	프로그램 및 작업(근로시간)
오 후	12시 20분 ~ 13시 30분	점심시간
	13시 30분 ~ 14시 3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4시 30분 ~ 14시 50분	쉬는 시간
	14시 50분 ~ 15시 5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5시 50분 ~ 16시 00분	쉬는 시간
	16시 00분 ~ 16시 5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6시 50분 ~ 17시 00분	청소 및 정리

III. 2024년 근로자 및 훈련생 명단

근로자	훈련생
강웅혁, 권구원, 김정우, 노동성 민상훈, 방지원, 손정희, 윤준형 이기홍, 이현석, 이형석, 이해민 정지훈, 최지윤, 황지선 (15명)	고아연, 김훈섭, 박승주, 송예진 심명진, 양현수, 양찬영, 엄혜정 유정임, 이영욱, 장서진, 장아영 정재준, 주하나, 진명호, 최준홍 (16명)

IV. 2024년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담당자	횟수	참여자	비고
자치회의	근로자	윤성호	연5회	근로자	자치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설 운영에 반영
	훈련생	금민희	연4회	훈련생	
지역사회 적응훈련	근로자	김은총	연5회	근로자	소그룹 프로그램
	훈련생	김원진	연5회	훈련생	
인권교육	근로자	금민희	연7회	근로자	
	훈련생		연4회	훈련생	
성교육		이보경	연4회	이용인 전체	
안전교육		윤성호	연6회	이용인 전체	
환경교육		김원진	연2회	이용인 전체	
자판기 관리훈련		김은총	주1회	고아연 / 김훈섭	본관 1층 자판기 관리
운동활동		김은총 김원진	주1회	이용인 전체	1) 요가·스트레칭 - 매주 목요일 - 훈련생 13:30~14:10 - 근로자 14:20~15:00 - 남동구체육회 연계
등산		류수진 김은총	연3회	이용인 전체	
여행		윤성호 김원진	연1회	이용인 전체	육구 조사 후 실시
특별활동		- 송년예술제 참석 - 기타 체험활동 등			

V. 근로자 급여 및 훈련수당

1. 근로자 급여

- 1일 2시간 근로(최저임금 적용제외 /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의 날, 동계 및 하계휴가, 개인 휴가 6일(2024년)은 유급
- 등산, 여행 등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함.

2. 훈련수당 : 월 50,000원(80% 미만 출근은 일할계산)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2024년 신설)

- 매월 10만원
- 소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한 지 1개월 이상 경과자
- 주당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훈련장애인
- 월 훈련일 수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제도를 받지 않는 자
(한국장애인개발원 훈련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4. 복지일자리사업 참여하는 훈련생은 일자리사업 참여 6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열린일터 훈련수당에서 공제

-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주당 2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배움수당 미지급

5. 한국장애인개발원 훈련생(6년까지 가능)

- 고아연, 심명진, 양현수, 엄혜정, 장서진, 최준홍(6명)
- 매월 10만원의 훈련수당 지급
- 80% 이상 출근 시 전액 지급이나 15일 이상의 출근일수가 되지 않는 달은 일할계산, 80% 미만 출근 시 미지급

VI. 보호고용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의 근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는 ‘훈련생’이라 칭한다.[개정 2024.1.1]

제3조(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보호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2. 보호고용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바에 따른다.

제4조(근로자의 정의) 본 지침에서 근로자라 함은 본 규정 제2장에 의거해 보호고용 근로자로 선정되어 근로계약이 된 자

제 2 장 근로자 선정 및 계약

제5조(근로자 선정) 근로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근로자 선정은 ‘근로자 선정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인 중 ‘근로자 선정평가’를 4회 이상 실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 단, 시설을 재이용하는 경우는 2회 이상 실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1.1]
3. 매 연말 분기별 실시한 ‘근로자 선정평가’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차기년도 근로자를 선정한다. 근로자의 최소 인원은 10명으로 한다.
[개정 2018.10.1][개정 2022.1.1]

제6조(근로자 선정평가) ‘근로자 선정평가’는 본 시설을 3개월 이상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1회 실시한다.[개정 2020.1.1] 단, 시설을 재이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1.1]

제7조(근로계약) 근로자로 선정된 이용인과 시설장은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3 장 프로그램

제8조(재활프로그램)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훈련 등
[개정 2021.4.1]
 - 2)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 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3)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 4)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5) 지역사회 자원 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제9조(취업)[신설 2020.1.1]

1.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면접 및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출근으로 인정한다.
2. 외부기관과 연계된 지원고용으로 현장훈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경우 훈련 기간 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3. 근로자가 외부 업체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과의 근로계약은 해지되고 종결한다. 단, 취업자가 업체와의 고용을 해지하고, 시설 재이용을 원하면 재접수하여 훈련생으로 입소할 수 있다.[개정 2021.4.1][개정 2024.1.1]

제 4 장 복 무

제10조(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난,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일시)

1. 근무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하고, 근로시간은 근로자에 따라 1일 2시간 또는 3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개정 2017.1.1][개정 2021.4.1][개정2022.1.1]

3. 휴게 시간은 근로계약에 의한다.[개정 2015.1.1]

제12조(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근로자가 계약된 근로시간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5.1.1][개정 2021.4.1]

2. 조퇴라 함은 근로자가 계약된 근로시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5.1.1][개정 2017.1.1][개정 2021.4.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2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1.1][개정 2018.1.1][개정 2021.4.1][개정 2023.1.1]

4.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5. 이용 기간 만료로 인한 종결을 앞두고 타 기관 이용을 위한 상담 및 현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출근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5.1.1][개정 2020.1.1][개정2021.4.1]

제13조(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3조의 1(대체공휴일)[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4조(임시휴무) 다음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근무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제15조(휴가) 연차휴가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2021.4.1]

1.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개근하였을 경우에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월

간 개근 시 그다음 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연차 유급휴가는 신청에 의해 1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3.1.1]
5. 연차 유급휴가는 열린일터에서 정한 휴가기간을 적극 활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또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그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열린일터 귀책사유로 인한 연차 유급휴가 소멸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3.1.1]
7.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름, 겨울 정기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23.1.1]

제15조의 1(유급휴일) 시설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본조신설 2021.4.1]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5조의 2(휴가원 및 허가) [본조신설 2021.4.1]

1.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이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설장은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는 업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5.1.1]

1. 결혼 : 본인(5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개정 2015.1.1]
2.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개정 2015.1.1][개정 2018.1.1]
3. 배우자 출산 : 1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 가능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시행 2013.2.2.)

[개정 2013.1.1][개정 2014.1.1][개정 2022.1.1]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 부모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제17조(병가)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 [개정 2023.1.1]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질병 또는 감염병(보균자)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가 이외 및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일이 부족할 때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감기, 몸살 등 단순 질환은 연가로 사용하며, 1호와 2호의 사유로 병가 사용 시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5. 근로자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삭제 2024.1.1]

제18조(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

1. 공무에 관하여 기관에 소환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감염병의 확산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검진을 요청받을 때[신설 2022.1.1]
6.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 5 장 임 금

제19조(임금 지급기준 및 방법)

1. 근로자는 월 1회 임금을 지급받는다.[개정 2014.1.1]
2.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지급한다.[개정 2015.1.1]
3. 임금은 서류상 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한다.
4. 근로자가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임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단, 본인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공

제할 수 있다.[신설 2014.1.1][개정 2017.1.1]

5. 시설은 매출금 및 법인전입금으로 근로자에게 상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개정 2018.1.1]

제 6 장 종 결

제20조(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개정 2021.4.1]

1. 근로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종결 의사가 있을 때[개정 2021.4.1]
2. 60일의 병가 이후에도 출근이 어려울 때[신설 2021.4.1]
3. 강제 종결
 - 1)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개정 2022.1.1]
 - 2) 근로자의 장애 및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타 이용인 및 직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주거나 시설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경우[개정 2022.1.1][개정 2024.1.1]
 -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하였을 때
4. 계약종결
‘근로자 선정평가’결과 근로자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지역사회 내 업체로 고용되어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개정 2020.1.1]
5. 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신설 2023.1.1]

제21조(재이용)

1. 근로자가 종결한 후 재이용을 원하면 재접수하여 직업재활계획회의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 훈련생으로 입소한다. 단, 종결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판정을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4.1.1]
2. 강제종결 이후 재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강제종결 사유에 대한 사후조치 및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확인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3.1.1]
3. 이용기간 만료로 인한 종결을 앞두고 타 기관 전이를 위해 종결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용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한다.[신설 2024.1.1]
4. 근로자가 종결 후 1년이 경과하여 재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1.1]

제 7 장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제22조(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서비스 담당자는 근로자의 개시, 종결 상황을 최소 2주 내에 근로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근로자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보호자 회의

제24조(보호자 회의)[신설 2013.1.1][개정 2024.1.1]

1. 보호고용 근로자의 보호자는 보호자 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VII.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작업활동프로그램생의 훈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차 보호고용 등으로 전이되어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는 ‘훈련생’이라 칭한다.[개정 2024.1.1]

제3조(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에게 적용되며,
2.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훈련생 정의)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사정 및 직업재활계획회의 결과 신규이용이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
[개정 2016.1.1][개정 2024.1.1]
2. ‘근로자 선정평가’ 결과 작업활동프로그램 대상으로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

제 2 장 서비스 과정

제5조(훈련생 선정 및 과정)

1. 훈련생 선정을 위한 이용인 모집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 결원 시 접수된 순서대로 진단한다.
2. 영역별 사정 후 직업재활계획회의를 실시하여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평가 기간은 일주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개정 2024.1.1]
3. 타 기관의 동일한 직업평가(2년 이내)를 통해 의뢰된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을 결정한다.[개정 2016.1.1][개정 2018.1.1][개정 2024.1.1]

제6조(결격사유) [삭제 2024.1.1]

1. 이용 기간이 만료하여 이미 퇴소한 자
2.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소자 중 3년 훈련 후 보호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한 자
단, 3년의 훈련기간 연장자는 훈련을 지속하고, 그 후 보호고용 전환이 되지 못한 경우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7조(훈련계약) 훈련생으로 입소가 확정된 훈련생과 시설장은 훈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훈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년 중 입소자의 경우에는 입소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약일로 한다.

제8조(구비서류) 열린일터 훈련생으로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계약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이용인의 권리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삭제 2024.1.1]
5. 복지카드 사본 1부
6. 건강진단서 1부
7. 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서류

제9조(훈련 기간) 3년간 훈련생으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3년 훈련 후 평가를 통해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훈련생에 한하여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단, 근로자로 전환 시 훈련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개정 2019.1.1]

제10조(훈련내용 및 훈련비)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거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1.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생이 장차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0시간 이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다.[개정 2019.1.1]
 - 1)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 2)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에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
 - 3) 작업훈련 : 작업 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 4) 직업평가 :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 5)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6)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7)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

2. 훈련비

1) 매월 정액의 훈련비는 없으나, 훈련내용에 따라 실비를 납부할 수 있다.

2) 중식비는 매월 5일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련수당 지급)

1. 훈련생은 월1회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개정 2014.1.1]

2. 훈련수당은 훈련계약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80% 미만 출근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1][개정 2024.1.1]

3. 훈련생이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훈련수당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단, 본인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다.[신설 2014.1.1][개정 2017.1.1]

4. 시설은 6개월 이상 이용한 훈련생에게 매출금 및 법인전입금으로 상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개정 2018.1.1][개정 2019.1.1]

제12조(취업)[신설 2020.1.1]

1. 훈련생이 취업을 위해 면접 및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출근으로 인정한다.

2. 외부기관과 연계된 지원고용으로 현장훈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경우 훈련기간 동안 시설 내 훈련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3. 훈련생이 외부 업체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과의 훈련계약은 해지되고, 종결한다. 단, 취업자가 업체와의 고용을 해지하고, 시설 재이용을 원하면 재접수하여 훈련생으로 입소할 수 있다.[개정 2021.4.1][개정 2024.1.1]

제 3 장 복 무

제13조(훈련생의 책임) 훈련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훈련생은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난,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훈련일 및 훈련시간)

1. 훈련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
[개정 2015.1.1][개정 2017.1.1][개정 2021.4.1]
3. 휴게 시간은 훈련계약에 의한다.[개정 2015.1.1]

제15조(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훈련생이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5.1.1][개정 2021.4.1]
2. 조퇴라 함은 훈련생이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5.1.1][개정 2017. 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6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8.1.1][개정 2021.4.1]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삭제 2021.4.1]
5.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6. 이용기간 만료로 인한 종결을 앞두고 타기관 이용을 위한 상담 및 현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한다. 단, 종결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현장평가 기간은 회당 최대 2주로 하고, 3회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5.1.1][개정 2020.1.1]

제16조(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6조의 1(대체공휴일)[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7조(임시휴무) 다음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훈련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 직원교육으로 인해 훈련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5.1.1]

제18조(휴가)

1. 본 시설은 여름과 겨울에 정기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시기와 휴가 기간은 시설

- 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
2. 본 시설은 1년에 5일의 휴가를 주고, 출근으로 인정한다. 단,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신설 2017.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6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7.1.1][개정 2018.1.1][개정 2021.4.1]

제19조(특별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5.1.1]

1. 결혼 : 본인(5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개정 2015.1.1]
2.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개정 2015.1.1][개정 2018.1.1]
3. 배우자 출산 : 1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 가능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시행 2013.2.2) [개정 2013.1.1][개정 2014.1.1][개정 2022.1.1]
4.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제20조(병가) 훈련생은 다음의 경우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 [개정 2023.1.1]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질병 또는 감염병(보균자)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가 이외 및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일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일이 부족할 때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감기, 몸살 등 단순 질환은 연가로 사용하며, 1호와 2호의 사유로 병가사용 시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5. 훈련생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삭제 2024.1.1]

제21조(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

1. 공무에 관하여 기관에 소환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감염병의 확산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검진을 요청받을 때[신설 2022.1.1]
6.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22조(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의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개정 2021.4.1]

1. 훈련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종결 의사가 있을 때[개정 2021.4.1]
2. 훈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개정 2021.4.1]
3. 60일의 병가 이후에도 출근이 어려울 때[신설 2021.4.1]
4. 강제 종결
 - 1)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개정 2022.1.1]
 - 2) 훈련생의 장애 및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타 이용인 및 직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주거나 시설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경우[개정 2022.1.1][개정 2024.1.1]
 -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하였을 때
5. 계약종결[신설 2020.1.1]
지역사회 내 업체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6. 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신설 2023.1.1]

제23조(훈련개시, 종결, 통보) 훈련 담당자는 훈련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 내에 훈련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4 장 대기자

제24조(대기자) 서비스 담당자의 서비스 이용 의뢰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서비스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가 유예된 대상을 '대기자'로 칭한다.

1. 현 서비스 대상자가 정원에 달했을 때
2. 특수학교 및 학급에 재학 중일 경우 (단, 고3에 한해 대기할 수 있다.)

3. [삭제2021.4.1]

제25조(재이용)

1. 훈련생이 종결한 후 재이용을 원하면 재접수하여 직업재활계획회의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단, 종결한지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판정을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20.1.1][개정 2024.1.1]
2. 강제종결 이후 재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강제종결 사유에 대한 사후조치 및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확인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3.1.1]
3. 이용기간 만료로 인한 종결을 앞두고 타 기관 전이를 위해 종결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용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한다.[신설 2024.1.1]
4. 훈련생이 종결 후 1년이 경과하여 재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1.1]

제 5 장 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 등)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훈련생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6 장 보호자 회의

제27조(보호자 회의)[신설 2013.1.1][개정 2024.1.1]

1.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의 보호자는 보호자 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2024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등록번호 2025-07호

- 발행일 : 2025년 2월
- 발행인 : 손 동 훈
- 편집인 : 장 선 영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만수동)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